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 아청법 대책회의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실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순수하게 가상으로 창조된 캐릭터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적용됐을 때의 문제점

1) 피해자가 없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가상 캐릭터라 실존하는 피해자가 없는데도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제작시 5년 이상 징역)

2) 처벌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데,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나 이 판별은 매우 불명확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 집니다. 결국 국민들은 표현물의 처벌여부를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합니다.

3)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아청법은 호기심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다운받는 많은 청소년들이 처벌되어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만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이 위축됩니다.

모호한 처벌기준과 과도한 처벌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5) 처벌이 과도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최소 징역 5년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까지 가해지는데, 이는 강도죄보다도 중한 처벌입니다. 더욱이 아청법은 표현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및 기대되는 효과

(1) 만화나 애니메이션에는 일반 음란물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음란성에 대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일반 음란물로 규제하고,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만을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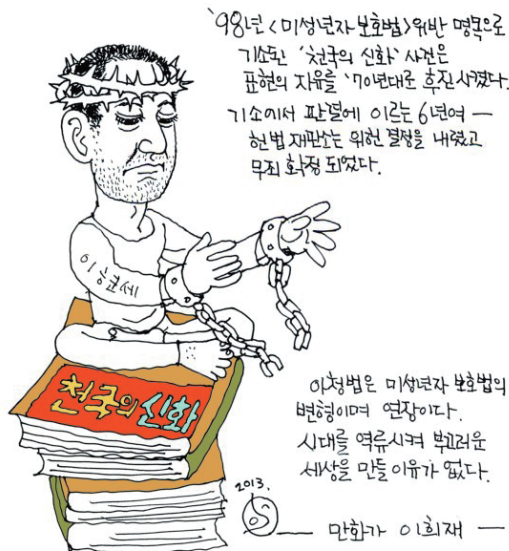
· 이미 최민희 의원이 실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만 아청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처벌대상이 명확해지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아청법을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도 어떤 표현물이 아청법으로 처벌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 운동 참여방법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심리 중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2)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고 최민희 의원을 응원해주세요.

블로그 : <http://minheetalk.net>

트위터 : @motheryyy

전화번호 : 02-784-9751

(3) 오픈넷 홈페이지 (<http://opennet.or.kr>) 를 방문해 주세요. 아청법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대책회의” 소개



이외에도 아청법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개인 참여자와 창작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문의 : 오픈넷 | 02-581-1643 | master@opennet.or.kr

“20대 대학생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버튼 한번 잘못 누른 것으로 형벌을 받는 것은 둘째 치고, 20년간 매년 사진을 갱신하면서 장래 예비범죄자로 관리를 받는 것도 모자라 10년 간 취업의 길도 막히게 되는 것이다. ...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이 자칫하면 비극적으로 주로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률이 될 수도 있다.”

- 변민선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중에서 -

